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8. 8.(목) 11:00
- 장 소 : 시의회 간담회장(2층)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7명
  - 위원 : 최석민, 진식, 이시복, 서호영, 임병욱, 윤혜영, 하경환
  - 배석 : 총무팀장, 문화복지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등

### •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9명 가운데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그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안건 설명 후)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칩니다.

### • 위원장

000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안건 설명 후)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칩니다.

### • 위원장

그럼,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선양 2.28하고 선양 한국인회하고 이렇게 교류하는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2.28민주기념사업회하고 같이 논의된 건가요?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4.19라든지 5.18기념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2.28 민주운동이 학생 운동이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2.28민주기념 사업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교류를, 협의를 미리 좀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보면 연길대학하고 우리 국채보상하고 북한 쪽에 우리 국채보상운동 같이 개발한다 해서 대구시에도 같이 했잖아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깐 한꺼번에 우리 국채보상운동, 2.28기념사업회하고 같이 토의를 미리 좀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쪽에 한꺼번에 갔을 때 교류를 해 보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위원

공공의료업체 우수 시책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연길병원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지역 국립병원병원보다 낫습니까?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국립 병원이고 공공의료를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대구의료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배워올 계획입니다.

• ○○○ 위원

이 중의병원 자체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사항이 부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봤을 때 우리보다 못한 데 가서 뭘 배우겠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필요성과 목적 파트에서 보시면 첫 번째 줄 3.1운동이라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출장보다는 연수목적으로 오해의 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수 목적이 아니라 사업 관계를 추후에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관계 행사를 지향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한중교류문화원이나 선양한국인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상호 협조와 관계되는 이런 것을 도출하려 간다, 그래서 꼭 가야 되는 출장이다 하는 부분이 좀 더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저는 중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어 있으면서 이 일정이 마치 관광처럼 되면 가시는 의원님들이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끼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술이 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회기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26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님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날짜가 22일부터 있고, 28일에 또 다른 큰 일이 있고 해서 27일까지밖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현지에서 2.28민주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현지에서 약 4억명이 4.19하고 5.18민주화운동 이런 기념행사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2. 28민주운동 여기에 대한 대구에서 하는 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2.28민주운동 기념행사도 현지에서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하러 가는 그런 것입니다.

• ○○○ 위원

그러면 우리가 2. 28기념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한다, 행사 개최하는 게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현지에서 대구에 있는 그런 정신을 살리고 대구 관광 홍보 협조 등을 통해 대구관광객 증가를 통한 경제적인 측면에도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 ○○○ 위원

저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조례를 따로 좀 보고 왔습니다. 조례를 보다가 몇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만약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쪽 살펴보니까 2조에서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설명을 듣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이 된다면 5조 6항에 보니까 출장의 필요성, 적합성, 기타 등등 정성적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저 뒤에 보면, 9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소극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다 통과한다고 해도 9조에서 정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들자면 9조 1호에서는 의회 개회 중인 경우를 소극적인 요건으로 듣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보면 예컨대 9조 4호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을 제가 어떻게 폄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간사께서 체크를 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회의록과 그다음에 이 계획서가 인터넷에 전부 다 공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안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기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번에 공무국외출장을 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징계를 받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점을 회의록에도 남기고 명명백백하게 공개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저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첫 번째 심사 사유로 삼고요. 두 번째 금방 거론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성적 논의를 거친 이후에 마지막 9조에 해당하는 그런 소극적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인 의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

• ○○○ 위원

2조를 제가 일단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안 상정이 될 때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제2조 몇 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위원

이 문건 자체로 조례로 봐서는 오늘 심사는 2조 5항의 본 의회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2조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이 될 것 같으면 의결서 내지는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신 이후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여기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간사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중에 5항도 있고 6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밖에 대구광역시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에 지금 가실 때 의장님 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결재 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대구광역시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 예를 들어 의료보건 관계에 아주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의회에서도 긴급 시스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 명에 의해서 어느 의원님이 가셔서 그 관계를 내용을 알아보고 와서 지휘해 달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될 것 같으나 지금 현재 안건이 올라와서 본회의는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여기서 의결을 해서 국외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끝으로 다음부터는 타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들의 요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타당한 요청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문건을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과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9조에 1항부터 4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항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다음번에는 역시 문건으로 이 문건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한 기술이 필요

오늘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지금 제9조 제4호에 대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물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도 공직윤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하고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 위원

선양한국인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가지고 대구 관광 홍보 협조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에 대한 홍보물 준비를 하셨는지?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예, 관광과에서 대구시 관광 관련해서 홍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위원

간단하게 면담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병원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그런 것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건데 미리 메일로 요청하였습니다.

• ○○○ 위원

저도 몇 년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나름 이렇게 심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한다는 것은 한번 갔을 때 굉장히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좀 업무를 보고 오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리 스테디를 해서 가면 좋다. 그냥 밑에서 공무원들이 해 주면 위원님들이 그냥 따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행할 때 훨씬 우리가 어차피 이 심사를 민간에서 하니까 심도 있게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틀에 박힌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그쪽에서 그래도 우리 대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지잖아요, 위원님들이 선출직이고 하시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표현에 나오는 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우리 지역 출신이 아마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건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실제 가보면. 그래서 현지에 갔을 때 그런 쪽하고도 조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한번 가는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어쨌든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문건이기 때문에 문건 자체의 필요성이나 목적 부분이 특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필요성과 목적에 의거하여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잡혀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출장이 되었겠다는 만족감을 주어야만 이런 공무출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더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은 좀 더 전문적으로 어디를 다녀온다, 출장이 조금 꼭 필요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처음 읽어봤을 때.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느낌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장 이것은 오히려 수행하거나 행정 지원을 위해서 가시면 동석자 전문위원, 주무관 이런 분들이 세 분 정도나 가시고요, 첫 번째 안건에서는 네 분이 가십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분 가셔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앞에 것이 더 많은 건지.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앞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명이 수행하는 것은 앞에 계신 부위원장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가셔서 한명은 휠체어 조작을 해야 되어서 부득이 3명이서 수행을 못하고 4명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 위원**

건교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나라가 비교적



좁고 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아무래도 멀지 않고 해서 거기에서는 4박을 하기에는 무리수도 있겠고 또 목적성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동하는데 교통 편의 정도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말레이시아 이동할 때는 항공편으로 이동합니다.

• ○○○ 위원

주룡새공원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새들 공원이라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그렇습니다.

• ○○○ 위원

산업단지 옆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대구에 새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중앙에 새공원이라고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룡새공원이나 주룡산업단지가 오염 통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만들 때 취지는 새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새도 수입해 오고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면 새공원이 새가 이만큼 잘 살고 그러고 있으니까 오염이 안 됐다 그런 취지하고 또 산업단지 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마라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그런 우수한 사례를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대구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입니다.

• ○○○ 위원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 KL모노레일 관련해서 과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좌식이 뭔가요?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모노레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수식이 있고 과좌식이 있는데, 저희들

3호선이 과좌식입니다. 바닥 판에 레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지나가는 그런 것이 과좌식입니다. 현수식은 어떤 것이냐면 레일이 있으면 그 밑에 바닥에 매달려 가는 그런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현수식은 많이 없고 대부분이 과좌식입니다. 저희들 모노레일도 과좌식이고, KL모노레일도 과좌식이고, 센토사 익스프레스에서 하는 것도 다 과좌식입니다.

• ○○○ 위원

KL모노레일은 2003년 8월 운행 개시한 대구 지하철 3호선 보다 더 이전 시스템인데, 우리가 더 잘 돼 있는데 이것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보탬이 될 게 있나요?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KL모노레일은 ‘스코미 수트라’라고 말레이시아 자체에서 제작한 것인데 대구 3호선은 3량인데, KL모노레일은 당초에 4량을 제작해서 운행을 하다가 4량이 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중단된 것이고요. 최근에는 2량으로 편성해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다시 4량으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그럼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모두

예

•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심사 기준을 참고하셔서 심사의견서 가부란에 가부 여부를 표시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수정가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텍스트에 진술 방식이라든가 강조점 수정하는 것은 수정가결이라고 하지 않죠?

일정이라든가 금액을 이야기할 때, 주요 사항을 이야기할 때 수정가결이라고 하죠?

• 간사

회의 진행상 제가 회의록을 남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주요한 사항... 인원, 금액, 출장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가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가결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모든 공무국외 출장 심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대면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서면 심사로 해도 되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 ○○○ 위원

사무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들 상임위출장은 물론이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의원님들 출장 나갈 때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아까 조례 몇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던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간사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출장 건은 저희가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2건이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9월달에 3건 정도가 9월 말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시간을 감안해서 1번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자매도시 교류 관련 건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언론에서나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급적이면 허락해 주시면 서면 심사로 같음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상임위 건과 관련해서 국외출장 연수는 우리가 대면 심사를 하고 기타 자매결연이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서면 심사하고 그런 정도로 원칙을 정해 놓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모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정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향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모두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의 의견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저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사담으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회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례를 조금 디테일하게 손을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금방 말씀처럼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 항을 보면 제외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어가 없습니다. 법 조문에 주어가 없습니다. 제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장님인지, 본회의 의결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체적인 이 조례의 틀로 봤을 때는 의장님이 그 권한 주체가 아니겠는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문언상으로 제외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 간사

이 조례가 선거 의회과에서 만든 것을 기초해서 거의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포맷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도 법제심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담당관실 어디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사실 기준도 그런데 여기 기준표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준표에도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집하려는 자료가 뭘지 저희들한테 제공된 게 없잖아요.

그게 뭘지를 알려줘야 저희들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대면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체크리스트가 심사

기준에 너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서 체크돼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 지금 이 위원회가 사전 심사의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적인 통제의 심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당 여부, 또는 환수 조치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문언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심사위원회가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결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만든 목적 자체가 사전에 한번 심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그게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런 목적에 충실한다 그럴 것 같으면 사전 심사와 사후 통제라는 기능이

원활하게 다 수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앞으로 문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시면 회의도 원활하게 잘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권한과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검토를 하시고 다음 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